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 2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2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송이(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4.16.19: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D 제과점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아, 네 생각하면서 딸딸이를 쳤다. 딸 딸이 다 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07:3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읍사무소 부근을 지나는 I 안에서 피해자 F(가 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K, F(가명), I(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태양, 피고인이 수사기 관및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